

# 디지털 이미지의 저작권 보호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송호진, 정의태\*

경운대학교 사회안전대학 멀티미디어학부 디지털영상전공

## A Study on the Copyright Protection and Improvement of Digital Image

Ho-Jin Song, Eui-Tae Jeong\*

Major of Digital Video School of Multimedia, College of Social & Safety, Kyungwoon University

**요약** 디지털 이미지의 저작권에서 저작권자는 본인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고, 저작권법의 정확한 이해를 통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며, 또한 저작권의 개념 정립을 기반으로 한 저작권자의 권리와 이용자들의 권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우선, 연구의 범위를 동일성 범위의 인정에 대한 사례와 디지털 이미지의 저작권법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이용자의 용도에 적합한 이미지 저작권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한 이미지 저작물의 등록 절차와 이미지 저작물의 활용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 융합, 디지털이미지, 저작권, 복제성, 동일성, 트레이싱

**Abstract** In copyright rights of the digital image, copyright holders need to protect copyrights and improve the improvement of copyright laws through accurate understanding of copyright laws, and also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copyright rights of copyright holders and the effectiveness of users' rights. First of all, the scope of the study is based on the case of recognition of the scope of the identity of the same scope and the copyright on the copyright law of the digital image, and the application of the image of the image of the image-writing image and the use of image artifacts based on the image copyright classification system suitable for the user's application.

**Key Words** : Convergence, digital image, copyright, replication, homogeneity, Tracing

## 1. 서론

### 1.1 연구배경 및 목적

사회적 현상에 따라 발의된 법률 중 디지털 콘텐츠와 디지털 이미지 저작권의 가장 사회적 근접성이 큰 법률은 저작권법 일부개정<sup>1)</sup>이라고 할 수 있다.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가 범람하는 현재는 무수한 디지털 이미지 매체의 활용의 활용으로 인해 저작권의 침해 사례가 급증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 큰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온라인상의 많은 디지털 이미지 저작물은

저작권에 따른 이용의 허용범위와 저작권법에 따른 많은 저작권 침해와 권리의 사례들이 무수히 많다. 그러므로 디지털 이미지의 저작권과 온라인 이미지 마켓에 대한 이해는 저작권자와 이용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더욱 진화하는 온라인 마켓은 온라인 공간에서 저작권법에 따른 규제와 자율의 문제점들을 합의와 해결방안이 시급하다. 인터넷 서비스와 IT 기술로 개인의 디지털 이미지 저작물 및 영상 등의 디지털 콘텐츠를 생성하고 유포하는 것은 상당히 쉽고 편리해졌으나, 온라인 콘텐츠를 개시하면 그 저작물이 온라인 사용자 누구에게나

1) 2008.2.29 법률 제8852호

\*Corresponding Author : Eui-Tae Jeong(art4jnk@ikw.ac.kr)

Received November 13, 2017

Accepted January 20, 2018

Revised November 17, 2017

Published January 28, 2018

노출될 수 있다.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의 동의 없이 누군가에 의해 무단으로 도용될 여지가 많으며, 타인의 창작물을 부분적으로 모방을 하거나 일부분만을 모방하여 그것을 변형하거나 다른 표현을 하는 혼합된 저작물이 문제가 된 사례가 많았으며, 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는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지만, 'Web 2.0'<sup>2)</sup>이라는 개념이 이러한 저작권법과는 다른 형태로 발전하고 있어서, 많은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실정이다.

##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디지털 이미지의 저작권자의 권한과 콘텐츠 사용자들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 사례에 대하여 주요 쟁점별로 분석한 후 앞으로의 나아가 갈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여 본다. 그리고 저작권 분쟁에서 저작권의 적당한 보호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에 대한 귀결점을 찾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수단들을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또한 저작권자인 작가와 이용자의 권익을 합리적이면서 조화롭게 반영하여 저작권법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되새겨 보기로 하며, 디지털 이미지 창작물을 중심으로 동일성 범위의 인정과 저작권 관련 판례 등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찾아본다.

## 2. 본론

### 2.1 디지털 이미지의 저작권

저작권의 사전적 의미는 "문학,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나 그 권리 승계인이 행사하는 배타적 및 독점적 권리"라는 의미로, 저작자가 지정한 저작권 표시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sup>3)</sup>에 따라, 저작자의 창작물을 타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범위 및 기준을 오인하는 경우의 사례들도 많다. 페이스북(Facebook), 인스타그램(Instagram) 등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온라인 컨텐

츠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으며, 그 저작물의 공개 설정의 허용 범위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된다. 하지만 자신의 저작물들을 비공개 설정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누구나 그 것을 쉽게 이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시사, 논설, 사실화 된 사건 사고 등의 단순한 전달의 목적성을 지닌 기사 및 자료들의 사용은 가능하다. 이러한 유희원칙의 성격에 맞게 사건과 사고의 전달이 목적인 것으로만 이루어진 자료들의 저작권은 보호받지 않으며, 사용이 자유롭다. 이러한 내용들의 온라인 신문이나 잡지 등의 하단을 살펴보면 출처가 명시되어 있으며,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설정이 되어있다. 하지만 문화의 경우에는 저작자의 감상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 이유로 주의 사항이 필요하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사항 등을 제외한 다른 내용들의 뉴스와 기사들의 내용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반된다. 예를 들면 인터넷 신문의 기사의 제목과 웹사이트의 주소의 직접 링크는 가능하며, 기사 내용의 일부분의 사용은 가능하다. 하지만 내용의 인용 및 많은 사용에서는 불가능하므로 뉴스 기사의 본문을 사용하는 것은 쉽지가 않으며, 많은 제약이 따른다. 디지털 이미지의 경우는 합성사진(合成寫眞)에서 저작권법 위반 사례가 많다. 예를 들어 합성사진의 저작권의 인정 범위를 보겠다. 합성사진이란 각각 다른 사진을 한 화면에 재구성하여 만들어내는 사진을 말하며, 여러 사진의 일부분을 따서 새로운 형상으로 합성한 이미지를 뜻하기도 한다. 디지털 사진에서의 합성사진 제작은 더 용이하며, 국내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의 요구 조건에 창작성이 요구되는 점에서 이러한 합성 사진에서도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이 성립된다. 인물사진의 경우에도 저작권과 소유권의 문제로 인한 분쟁의 사례들이 많은데, 이것은 사진의 소유권과 사진저작물의 저작권의 구별에 대한 문제를 말한다.

저작권법은 예술계에 종사하는 작가들의 입장에서는 권리 보호와 직결되므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저작권법과 관련해서는 많은 분쟁과 논의가 있으며, 저작권법도 시대와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 어떤 예술작품이 저작권에 의한 보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작품이 저작물로 성립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새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도 있다.

2) 개방, 참여, 공유의 정신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직접 정보를 생산하여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웹 기술 (출처: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

3)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일정 조건을 지키면 얼마든지 이용해도 좋다는 내용을 표시한 일종의 기호 (출처: 다음백과 <http://100.daum.net>)

## 2.2 디지털 이미지 저작권과 관련 분쟁 사례

저작권법(전부개정 2006. 12. 28. 법률 제 8101호)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저작권법(1957.1.28. 법률 제432호)은 저작물을 '학문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물건.'이라고 정의하고 있었는데, 그 후 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著作権法이 개정되면서, 학문, 예술과는 별개로 文學을 저작물의 범위로서 독립시켰다. 이는 베른조약을 포함한 국제적인 관례가 문학을 예술과 구분하여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sup>4)</sup> 2006년 개정법은 최근에 데이터베이스, 컴퓨터프로그램 등 문학, 학술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도 저작물로 인정하는 등 저작물의 범주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와 국내의 학설, 판례의 경향을 반영하여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주 부분을 삭제하고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였다.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이라면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지 않더라도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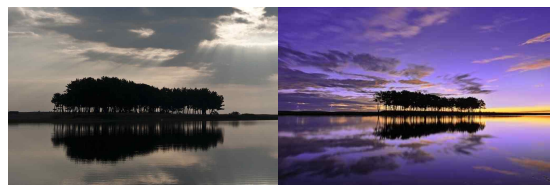
하지만 저작권법에 규정된 간단한 정의만으로 著作権을 완전하게 정의할 수는 없고, 특히 저작물의 개념에 대하여는 종래 여러 가지 학설이 존재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각국의 저작권제도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통일된 개념을 정립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문제이다.<sup>5)</sup> 우리나라 대법원은 저작물을 '표현하는 방법, 형식 여하를 막론하고 학문과 예술에 관한 일체의 물건으로서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에 관한 창작적 표현물'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sup>6)</sup> 위와 같은 저작권법이나 판례에 나타난 저작물의 定義에 기초하여 도출되는 저작물의 성립요건으로서는, 첫 번째 창작성이 있을 것, 두 번째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일 것 등 2가지를 들 수 있다.

한편, 이미 성립한 저작권이 저작물의 내용, 예를 들어 '淫亂性' 또는 '不穩性'을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음란성'이나 '불온성'이라는 개념은 시대

와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므로 이러한 流動的인 개념을 기준으로 하여 저작권의 보호 여부가 결정되어서는 안된다. 저작물이 가지는 학문적, 예술적 가치의 유무 및 고저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윤리성 여하도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실사 그 내용 중에 不道德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

최근에 개최한 사진 공모전의 유의사항 중 저작권 분쟁에 관련된 내용 들을 몇 가지 알아본다.

입상자는 반드시 원본 파일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수상이 취소된다. 타인작품의 도용, 컴퓨터 합성 또는 조작한 사진도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수상 후에도 위반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수상 취소 및 수상 내역을 환수조치 하게 된다. 응모작의 저작권은 출품자에게 있으며, 당선작의 저작 재산권은 주최 측에 귀속된다. 주최 측은 공모전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상작에 대하여 2차 저작물로 활용할 수 있다. 그 외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저작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출품작에 대한 일체의 저작권 및 초상권 관련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으며, 주최 측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간 디지털 이미지의 합성 사진에 대한 저작권법의 많은 위반 사례가 발생함으로 개정된 유의 사항이다. 국내에서는 '삼척 솔섬 사진 저작권 침해 논란' 이 대표적이다. 영국 출신 사진작가 마이클 케냐(Michael Kenna)는 공근혜 갤러리에 '솔섬' 사진 작품에 관한 국내 저작권 등을 양도하였는데, 대한항공사가 '솔섬'을 배경으로 한 사진을 광고에 사용하자 공근혜 갤러리가 대한항공사를 상대로 사진의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작가의 사진과 대한항공사의 사진이 전체적인 콘셉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양 사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이 사건 사진저작물과 이 사건 공모전 사진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 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원고 공근혜 갤러리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이유 없다는 결론으로 공근혜 갤러리의 패소로 판결되었다.



[Fig. 1] Michael Kenna, Pine Trees, 2007

[Fig. 2] Kim Seong-pil, Sol Island, 2010

4) 베른조약 제2조는, "The expression 'literary and artistic works' shall include every production in the literary, scientific and artistic domain..."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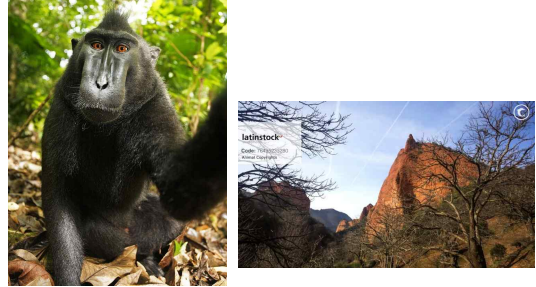
5) 일본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著作権을,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文學, 學術, 美術 또는 音樂의 범위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일본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사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다.

6) 대법원 1979. 12. 28 선고 79도1482 판결.

### 2.3 동물 저작권 (Animal Copyright)

영국의 사진가 데이비드 슬레이터(David Slater)가 2011년 인도네시아의 술라웨시(Sulawesi)섬에서 촬영한 ‘검정 짧은 꼬리원숭이’(macaque) 사진의 분쟁 사례를 보겠다. Naruto 라는 이름의 원숭이는 작가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셀피(selfie : 자가촬영 사진)를 찍었고, 작가는 이 사진을 공개하였다. 이 원숭이의 사진은 위키피디아(wikipedia) 를 포함한 다양한 곳에 공개되었으며, 동물은 사진의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사례이다. 그 후 2015년, PETA(동물보호단체)<sup>7)</sup>는 이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동물에게 있다고 주장하게 되고, 그 사진이 포함된 출판물인 「Wildlife Personalities, 야생의 인격체」 작가와 출판사는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고, PETA는 법원에게 원숭이를 대신하여 대상 사진으로 인한 수익을 인도네시아의 섬 술라웨시에 서식하고 있는 원숭이들을 위해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판결 요지는 연방지방법원에서 동물은 저작권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소송을 기각하였다. 이 사례를 살펴보면 원숭이가 자신을 찍은 사진의 경우 저작권이 문제된 것인데, 작가가 잠시 카메라를 내려놓은 사이에 한 마리의 원숭이가 카메라를 갖고 간 후 얼마 후에 사진기를 회수하게 되었는데, 그 원숭이가 자신을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이 사진은 2014년 위키미디어 재단(Wikimedia Foundation Inc.)<sup>8)</sup>이 운영하는 무료 콘텐츠 데이터베이스인 ‘위키미디어 커먼즈(Wikimedia Commons)’에 등재되었으며, 작가는 2014년 1월 이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위키미디어에 사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 저작권청은 위 사진에 대해서 저작권을 인정해 주지 않았으며, 샌프란시스코 미국연방지방법원도 같은 판결을 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저작권은 사람이 만든 창작물에만 주어진다. 이 사건에 PETA가 작가에게 다시 저작권이 원숭이에게 있다는 소송을 걸게 된 것이다. 이 소송은 동물의 권익을 존중해야 된다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무려 2년이나 전개되었고 ‘동물에게 저작권이 없다’라는 법원의 임시 판결이 내려진다. 결국 작가와 PETA는 수익의 25%를 넘겨받기로 서로 합의를 보게 된다.

PETA는 이 수익으로 야생동물을 보호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Fig. 3] Self Portrait by Naruto

[Fig. 4] Animal Copyright

이러한 문제를 통해 동물들에게 그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동물저작권 (Animal Copyright)에 대한 캠페인이 시작되어 세계야생생물기금(WWF)와 스페인 이미지 아카이브 라틴스톡 이미지 아카이브 회사(Latinstock)과 함께 동물저작권 사이트를 개설하여 유료로 사진을 제공하는 곳을 개설하게 된다. 그들은 동물들에게 카메라를 주고 그들이 움직이며 직접 촬영한 사진들을 편집하여 이미지사이트에 올려 판매하였으며, 사진의 저작권으로 인한 판매수익은 멸종위기동물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되게 하였다.<sup>9)</sup>

#### 2.3.1 트레이싱 저작권 (Tracing Copyright)

만화 제작에서 인터넷에서 습득한 사진 이미지를 만화 내에 직접 사용하거나 그 윤곽선을 베끼어 만화를 만드는 일을 일명 트레이싱 (Tracing) 이라고 하며, 만화에서는 작가의 상상만으로 창작하기가 쉽지 않기에 창작의 보조 수단으로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다. 타 저작물의 이미지나 사진을 이용하여 이미지 저작물이나 만화를 제작하거나 타인의 사진을 똑같이 그림으로 그리거나 사진을 만화에 삽입하는 것은 저작권 중 ‘복제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이다. 타인의 사진이나 이미지의 일부를 변형하여 그린다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二次的著作物作成權)’<sup>10)</sup> 침해가 된다. 저작권법상 원 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하며, 독자적인 저작물의 보호를 받지만, 2차적 저작물은 원 저작물을 바탕으로 이를 이용하

7) 동물 권리를 위한 세계적인 단체로, 동물을 윤리적으로 대우하는 사람들이라는 뜻

8) 위키백과 같은 각종 위키 관련 사이트를 관리하는 비영리 재단

9) Issue & focus on IP. No.2016-3, 2016. 인용

10) 원 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 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는 권리.

여 재창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1)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경우 원저작자는 이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반면 2차적 저작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토대로 이에 대한 '실질적개변(Substantial Variation)'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원 저작물에 별도의 창작성이 가미되어 사회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여겨질 정도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처럼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할 경우 제3자가 이를 허락 없이 복제하여 사용하였다면, 이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사안에서 번역자는 외국 소설의 저작권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저작물, 즉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권리 주장이 가능할 것이다. 12) 미국 LA의 화가 셰퍼드 페어 (Shepard Fairey) 는 오바마의 초상 포스터를 2006년 4월 27일 AP 사진기자 매니 가르시아 (Mannie Garcia) 가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찍은 오바마 당시 상원의원의 사진을 바탕으로 'Hope' 란 작품을 제작하였다.



[Fig. 5] AP Photo / Mannie Garcia  
 [Fig. 6] Hope / Shepard Fairey

하지만 문제는 구글 검색을 통해 이 사진을 찾아낸 작가가 AP통신사 측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출처 또한 밝히지 않아서 저작권 분쟁에 휩싸이게 된 것이다. AP통신 대외협력담당자는 포스터에 사용된 사진을 사용하려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연락을 취했으며, 원만한 해결 방법을 모색했지만, 작가의 변호 담당인은 작가의 작품 활동에 대한 권리 측면에서 '공정한 활용(fair use)<sup>13)</sup>의 개념으로 저작권에 대한 당연성으로 맞서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게 되었으며, 컬럼비아대학 법학과 제인 긴스버그 (Jane Ginsburg) 교수의 작가가 적어도 원저작자의 이름을 명시했어야 한다는 주

장과 시민단체의 지적재산권 전문가의 작가의 상업적 목적이 아닌 정치적 목적의 제작물은 사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권리였다. 이 포스터는 시사주간 타임지에서 2008년 '올해의 인물'로 오바마 당선자를 선정하면서 표지에 사용하였고, 작가는 4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남겼지만 AP통신이 작가에게 사진 무단 도용 소송을 제기하였고, AP통신과 포스터로 벌어들인 수익을 나누기로 합의하여 종결되었다. 그 후 작가는 오바마 포스터의 수익으로 상업적인 성장하여 의류회사와 다양한 상업적인 작품의 판매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 3. 결론

디지털이미지의 저작권에 대한 많은 분쟁이 있어왔으며, 저작자들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은 반드시 필요한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시각예술분야에서는 작가의 정당한 권리에 대해 부당하게 취급되어온 사례들이 많다.. 이제는 저작권자에게 지속적인 창조적 작품 창작을 할 수 있도록 적법하고 합당한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대변하며, 잠재적 저작권자인 일반 대중의 문화 재창조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당하고 권리본질의 한계를 벗어난 저작권 주장에 대하여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문화에 대한 조정자이자 제2의 창조자'로서의 소명을 다해야 한다.

이 본질적 궁극적 역할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디지털이미지의 저작권에 대한 깊이 있는 인지를 정신적인 틀로 수용하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의 인류 보편적인 양식과 국제적 흐름에 맞는 운영 시스템의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작권법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은 이미 많은 판례가 축적되어 있기는 하나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계속 많은 문제가 새로 제기되곤 한다. 결국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 해석과 개정 등 변화에 따르기 위한 노력은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적절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미지 저작자들은 어떤 요소들이 저작권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제작진들이 어떻게 저작권을 지켜야 하는지 혹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창작 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온전히 누리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작권과 그에 관련된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고, 자신의 저작물이 중요한 것 이상으로 타인의 것도 중요하므로 타인의 저작권에 대한 지식도 많아야 한다. 위의 내용

11) 저작권 상담사례 100+, 2014.  
 12) 한국저작권위원회, 2014.  
 13) 원작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새 작품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는 의미.

들을 바탕으로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서 디지털 이미지 콘텐츠의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를 위한 보다 합리적인 저작권법의 개정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개선 방향은 저작자의 창작 의욕과 보다 창의적인 저작물을 제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창작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과 관련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REFERENCES

- [1] M. Lee, Digital Contents and Copyright Utilization, Wybooks, 2015,
- [2] D. Ha, Digital content rights, Communications Books, 2014
- [3] K Lee, Copyright and Interconnection : Case Studies, Name of meat, 2016
- [4] I Kim, "Study on the mediation System of the Digital Contents Dispute in Online",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Vol.- No.32, pp. 10-13, 2005.
- [5] S Seul, "Controversies of Originality in Copyright Works Based on Facts: Focused on Historic Novel, News, Photograph, 3D Printing Digital Model", Human rights and justice, 1.- No.449, pp. 51-59, 2015
- [6] C. Hong J study on the recognition of photographic works and copyright, Kyung Hee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1
- [7] Case study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Reporting for current reporting, Article 26 of the Copyright Act.
- [8] Copyright and information sharing : Based on the CCL, Keimyung University Medical Library, Webzin 27
- [9] H Song, "A Study on Copyrights of Digital Photography and Improving of copyright protection", The Society of Modern Photography & Video, Vol.-No.18-3, pp. 33-47, 2014
- [10] Issue & focus on IP. No.2016-3, 2016
- [11]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53XXX9700055>
- [12] <http://news.joins.com/article/21930470#none>
- [13] <http://blog.naver.com/yongsoolim/221078719968>
- [14] <http://kilo32.tistory.com/1>.
- [15] <http://www.bloter.net/archives/203774>.
- [16] [levia.tistory.com/Web 2.0 Paradigm, Shift to New Age](http://levia.tistory.com/Web_2.0_Paradigm_Shift_to_New_Age)
- [17] <http://blog.naver.com/sungkun6/220496977553>

송 호 진(Ho-Jin Song)

[정회원]



- 2003년 2월 : 계명대학교 대학원 사진디자인전공 (미술학석사)
- 2007년 2월 : 대구대학교 대학원 미술디자인학과 응용미술전공 박사수료
- 2014년 3월 ~ 현재 : 경운대학교 디지털영상전공 조교수

- 관심분야 : 디지털영상, 사진영상
- E-Mail : [hjsong@ikw.ac.kr](mailto:hjsong@ikw.ac.kr)

정 의 태(Eui-Tae Jeong)

[정회원]



- 1991년 8월 : 동국대학교 미술학과 (미술학사)
- 1997년 1월 : 뉴욕대학교 대학원 (예술학석사)
- 2001년 3월 ~ 현재 : 경운대학교 디지털영상전공 부교수

- 관심분야 : 영상콘텐츠제작, 스토리 텔링
- E-Mail : [art4jnk@ikw.ac.kr](mailto:art4jnk@ikw.ac.kr)